

<p>(이하 “입금모계좌”라 한다)에 당일중 입금하는 업무 및 입금된 거래내역을 “<u>을</u>”에게 전송하는 업무</p> <p>③조회서비스: “<u>을</u>”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u>을</u>”이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p> <p>제 3조(업무처리 및 자금정산시간)</p> <p>①(생략)</p> <p>②자금정산은 평일기준(휴일포함) 1일2회 실시하며, 정산시간은 <별첨2>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u>갑</u>”의 시스템사정, 경영정책상의 사유등에 의하여 동 정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을</u>”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p> <p>제 4조(계좌의 지정)</p> <p>①“<u>을</u>”은 “<u>갑</u>”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모계좌”와 “수수료인출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표생략)</p> <p>②“입금모계좌” 또는 “수수료인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을</u>”은 그 내용을 “<u>갑</u>”에게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u>갑</u>”이 전산등록을 마친때 그효력이 발생한다</p> <p>제 5조(입금업무 처리)</p> <p>①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한정한다.</p> <p>②“<u>갑</u>”은 “<u>을</u>”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u>을</u>”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u>을</u>”이 미리 정한 입금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p>	<p>지정한 모계좌 (이하 “입금모계좌”라 한다)에 당일중 입금하는 업무 및 입금된 거래내역을 “<u>회사</u>”에 전송하는 업무</p> <p>다.조회서비스: “<u>회사</u>”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을 “<u>회사</u>”가 조회 가능하게 지원하는 업무</p> <p>제 3조(업무처리 및 자금정산시간)</p> <p>①(좌동)</p> <p>②자금정산은 평일기준(휴일포함) 1일2회 실시하며, 정산시간은 <별첨2>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u>은행</u>”의 시스템사정, 경영정책상의 사유등에 의하여 동 정산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회사</u>”에 사전 통보하기로 한다</p> <p>제 4조(계좌의 지정)</p> <p>①“<u>회사</u>”는 “<u>은행</u>”이 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금모계좌”와 “수수료인출계좌”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좌동)</p> <p>②“입금모계좌” 또는 “수수료인출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u>회사</u>”는 그 내용을 “<u>은행</u>”에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u>은행</u>”이 전산등록을 마친때 그효력이 발생한다</p> <p>제 5조(입금업무 처리)</p> <p>①가상계좌에 대한 입금자원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한정한다.</p> <p>②“<u>은행</u>”은 “<u>회사</u>”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u>회사</u>”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u>회사</u>”가 미리 정한 입금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p>	<p>“갑”과 “을”을 “은행”과 “회사”로 문구변경</p> <p>“갑”과 “을”을 “은행”과 “회사”로 문구변경</p> <p>“갑”과 “을”을 “은행”과 “회사”로 문구변경</p>
---	--	---

- ③ "갑"은 "을"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을"에게 전송 또는 조회 가능하게 지원한다.
- ④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입금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완료된 후에 출금가능하기로 하며, 자기앞수표에 대한 "을"의 인식 및 처리는 "을"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 ⑤ "갑"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을"의 해당 입금모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한후 "을"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입금업무처리의 예외)

"갑"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제 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갑"과 "을"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갑"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처리결과의 전송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의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을"에게 별도 통지 한다

제 8조(거래의 취소)

- ③ "은행"은 "회사"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를 전산망에 의하여 "회사"에 전송 또는 조회 가능하게 지원한다.
- ④ 자기앞수표로 가상계좌에 입금되어 입금모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가 추심 완료된 후에 출금가능하기로 하며, 자기앞수표에 대한 "회사"의 인식 및 처리는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 ⑤ "은행"이 수납한 자기앞수표가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동 부도대전을 "회사"의 해당 입금모계좌에서 차감하여 정리한후 "회사"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조(입금업무처리의 예외)

"은행"이 입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가상계좌 또는 입금모계좌가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제 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은행"과 "회사"는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상호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거래명세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요청이 있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 중 "은행"이외의 타금융기관에 의한 거래 내용은 금융결제원의 처리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처리결과의 전송내용과 실제 처리내용이 상이한 때에는 최종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회사"에 별도 통지 한다.

제 8조(거래의 취소)

"갑"과 "을"을 "은행"과 "회사"로 문구변경

"갑"과 "을"을 "은행"과 "회사"로 문구변경

<p>"값"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값"의 전산시스템 오류,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값"은 "을"에게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9조(수수료)</p> <p>①수수료의 산정 및 징구기준은 붙임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p> <p>②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값"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며 "을"은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전까지 이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시행일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③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명 업일)에 "을"의 수수료인출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없이 자동인출한다</p> <p>제 10조(효력 및 계약기간)</p> <p>①이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값"이 "을"에 대하여 본 금융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다만, 감독행정기관의 승인(인,허가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승인이 있는 날부터 발효한다.</p> <p>②(생략)</p> <p>제 11조(계약해지)</p> <p>①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p>	<p>"은행" 이 전산처리한 내역 중 "은행" 의 전산시스템 오류, 이중입금이나 오조작 등에 따른 오류에 한하여 "은행" 은 "회사" 에게 동 거래의 취소 및 정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 9조(수수료)</p> <p>①수수료의 산정 및 징구기준은 <별첨1>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p> <p>②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은행" 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회사" 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며 "회사" 가 시행일 전일까지 이의사실을 통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시행일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수수료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p> <p>③수수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명 업일)에 "회사" 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청구 절차없이 자동인출한다.</p> <p>제 10조(효력 및 계약기간)</p> <p>①이 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며, 그 기간은 "은행" 이 "회사" 에 대하여 본 금융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감독행정기관의 승인(인,허가를 포함한다)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승인이 있는 날부터 발효한다.</p> <p>②(좌동)</p> <p>제 11조(계약해지)</p> <p>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지할 수</p>	<p>이해쉬운 용어로 변경</p> <p>"값" 과 "을" 을 "은행" 과 "회사" 로 문구변경</p>
---	--	--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간에 서면 합의한 경우 계약상대방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생, 기업개선약정을 신청 또는 체결하거나, 채권자 또는 법원에 의해 관리인 등이 선임되는 등 신용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은행”과 “회사”는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 관련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나, 금융환경의 급변으로 본 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타 “은행” 또는 “회사”가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금융관계 법규위반 등으로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p>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전항 2호인 경우에는 사전 이행최고 등을 거쳐 이행이 없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보 1개월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내용삭제)</p> <p>③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별첨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와 동시에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p> <p>제 12조(전산운용) 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갑"과 "을"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p> <p>제 13조(기밀유지)</p>	<p>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회사”가 금융관계 법규위반 또는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은행”과 “회사”는 각각의 경영정책상의 사유, 관련법령의 제·개정, 금융감독기관의 지시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하게 된 경우. ~ 5 (삭제) <p>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에 서면통지로서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은행”은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회사”에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별첨의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에 의한 미지급액을 포함한 총 잔여 수수료를 해지와 동시에 “은행”에 지급해야 한다.</p> <p>제 12조(전산운용) 이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전산운용사항은 "은행"과 "회사"의 실무담당 부서장이 따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p> <p>제 13조(기밀유지)</p>	<p>고객에게 불리한 문구변경</p> <p>고객의 계약해지 절차 간소화 및 은행의 계약해지요건 명확화</p> <p>“갑”과”을”을 “은행”과 “회사”로 문구변경</p>
---	---	---

<p>①"값"과 "을"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생략)</p> <p>제14조(생략)</p> <p>제 15조(신의성실 의무) "값"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p> <p>제 16 조(준용사항) 본 가상계좌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값"의 수신거래 기본약관과 당해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하며, "값"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CD 공동망, 전자금융망, 타행환공동망 등)의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p> <p>제 17 조(기 타) ①~②(생략) ③"값"의 사유가 아닌 타행등의 이의제기로 인한 금융공동망 사용불능등의 금융환경의 변화 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값"은 그 책임을 면한다.</p> <p>제 18조 (이하 생략)</p>	<p>①"은행"과 "회사"은 상호 정보교환을 통하여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본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좌동)</p> <p>제14조(좌동)</p> <p>제 15조(신의성실 의무) "은행"과 "회사"는 본 계약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행 하여야 한다.</p> <p>제 16 조(준용사항) 본 가상계좌서비스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가상계좌 및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은행"의 수신거래 기본약관과 당해 입금모계좌(수수료인출계좌)의 거래약관을 준용하며, "은행" 이외의 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망, 타행환공동망 등)의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p> <p>제 17 조(기 타) ①~②(좌동) ③"은행"의 사유가 아닌 타행등의 이의제기로 인한 금융공동망 사용불능등의 금융환경의 변화 에 의한 사유로 서비스가 불가능할 때 "은행"은 그 책임을 면한다.</p> <p>제 18조 (이하 좌동)</p>	<p>“값” 과 “을” 을 “은행” 과 “회사” 로 문구변경</p> <p>“값” 과 “을” 을 “은행” 과 “회사” 로 문구변경</p> <p>“값” 과 “을” 을 “은행” 과 “회사” 로 문구변경</p>
---	--	---

<별첨1>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 (단위: 원)					<별첨1> 가상계좌서비스 수수료 기준표 (단위: 원)			수수료문구 단순화
서비스구분	수수료 이용 구분	이용수수료	중계수수료	계	서비스구분	수수료 이용 구분	수수료	
입금서비스	-당행 이용→“회사”의 계좌로 입금	-	건당 300	건당 300	입금서비스	-당행 이용→“회사”의 계좌로 입금	건당 300	
	-타행 이용→“회사”의 계좌로 입금	고객부담*	건당 300	건당 300		-타행 이용→“회사”의 계좌로 입금	건당 300	
계좌개설서비스	계좌 신규개설 수수료	-		좌당 100	계좌개설서비스	계좌 신규개설 수수료	좌당 100	
최저수수료	매월 중계개설수수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	-	10만원	최저수수료	매월 입금수수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10만원	
※매월 중계수수료가 10만원이하일 경우 월최저수수료 10만원을 적용한다. (이하내용삭제)					(내용삭제) (좌 동)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